

## 앞으로는 한 번의 신고로 불법추심을 차단하고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 관련 현장 간담회 및 유관기관 협약식 개최 -

【관련 국정과제】 66. 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4. 금융범죄 예방 및 단속 강화)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 불법사금융·불법추심에 대한 초동대응 및 피해확산 방지체계 강화

- ✓ 국민들께서 **한 번의 피해신고**로 불법추심 중단, 소송지원 등 피해 구제, 기타 정책적 지원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담자**(서민금융통합지원 센터)를 배정·지원하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을 **3.9일**부터 개시
  - ✓ 현장 간담회를 통해, 시범 테스트 운영기간('26.2.23~'26.3.6) 동안 실제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한 사람들의 체감 효과, 보완사항 등 의견을 청취 → 향후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 개선 등에 적극 반영
  - ✓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체결된 정부-유관기관 간 협약식('26.2.6일, 총리실-금융위-경찰청-금감원-신복위-서금원-법구공) 에 이어, 원스톱 종합·전담지원시스템 운영에 참여하는 정부부처 및 관련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식\*(MOU)도 개최  
→ 금감원, 서금원·신복위, 법구공 뿐 아니라 지자체 복지재단의 서비스 이용시에도 불법사금융 원스톱·종합 전담지원시스템으로 연계·지원
- \* 금융위, 금감원, 서금원, 신복위, 법구공, 서울시복지재단, 경기복지재단 참여

## I. 추진 배경

불법사금융은 단순한 대출이 아닌, 채무자가 위법·부당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고 불법추심으로 금전을 갈취하는 행위로서, 개인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악질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해당한다. 그간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불법사금융을 차단하고 피해를 구제받고자 할 경우 금융감독원, 경찰, 지방자치단체, 기타 지원기관 등에 기관별로 일일이 신고하면서, 피해사실을 각 기관에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직접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추심행위가 즉시 중단되지 않고 지속될 경우, 피해자가 심적·육체적으로 피로감을 느껴 피해 구제를 포기하는 경우도 존재하였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25.12.29일 「금융부문의 역할 강화를 통한 불법사금융 근절 현장간담회」에서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담자(신복위)의 면밀한 조력을 받아 보다 수월하게 피해를 신고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 구축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원스톱 종합·전담지원시스템의 시범 운영('26.2.23 ~ 3.6일)을 거쳐 금일('26.3.9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同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유관기관 간 긴밀한 업무 협조를 위한 협약식 체결을 위해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마련에 있어 전담부서 설치, 불법사금융 광고 근절 등 경기도의 정책 사례를 벤치마킹 하도록 한 대통령 지시사항 ('25.12.26일) 이행 방안 반영
- ※ 소상공인의 부채문제 해결, 취약계층의 극단적인 어려움 경감 등을 위해 "당신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떤 것을 하고 싶든지 꼭 물어서" 검토를 하라는 대통령 지시사항 (충청권 타운홀 미팅('25.7.4.)) 등도 반영

**<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현장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 '26.3.9.(월) 10:00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중앙센터(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 7층)
- 참석자
  - (정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장, 금융소비자국장
  - (유관기관) 금융감독원 부원장, 서민금융진흥원 원장 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법률구조공단 구조국장
  - (소비자·상담관) 불법사금융 피해자, 불법사금융 피해지원 전담자 및 상담관
  - (현장전문가) 경기복지재단 이사장,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센터장, 이상민 교수(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등

## II. 현장 간담회

### <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 준비에 힘쓴 신용회복위원회 및 유관기관에 감사를 표하였다. 또한, 이번 정부 들어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는 반사회적 대부 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하는 대부업법 및 시행령이 개정·시행(‘25.7.22일)된 바, 이와 같은 강력한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눈높이에서 적극적으로 조력하는 **종합적인 전담 지원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종전에는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절차가 복잡하여 피해자가 정부의 조력을 받는 것을 도중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피해자가 어느 경로를 통해서 피해를 신고하더라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전담자(신복위)를 배정하여 불법추심 중단, 전화번호·대포통장 차단, 채무자 대리인 무료 선임, 경찰 수사, 소송지원 등 피해회복, 정책적 지원까지 **소 과정을 돕게 된다고 언급**하였다. 그간 시범 운영기간(2.23~3.6일)을 거쳐 금일(3.9일)부터 정식으로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이 개시되는 만큼, 한 사람의 피해자라도 더 **빠르게 불법사금융으로부터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유관기관이 협약식(MOU) 체결 등을 통해 적극 협력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하였다.

### <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 운영 계획 및 성과 >

이어서,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의 구축·운영과 관련하여 실무 작업을 진행해 온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신용회복위원회)의 운영 계획 발표가 있었다.

그간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 제도는 그 성격별로 금융감독원(행정적 조치), 경찰(수사), 법률구조공단(법률조력) 등 기관별로 분절화\* 되어 운영 중이었으며, 불법추심에 시달리는 피해자가 관련 제도를 스스로 찾아보고, 개별 기관에 각각의 절차를 신청하는 정책공급자 중심의 지원체계로는 종합적인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

- \* ① 불법추심 연락(전화/SNS) 차단: **금감원** 신고 → 과기부 전파관리소, SNS사에서 차단  
② 채무자대리인 선임 및 불법추심 대응: **금감원**에 신청 → **법률구조공단**에서 변호사 선임  
③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금감원**에 신고 → 경찰 수사외뢰 / ④ 수사 및 처벌: **경찰**에 고소 등  
⑤ 불법사채 원금·이자 반환 등 피해회복: **금감원**에 신청 → **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 진행

이에, 정부는 8개 권역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신복위 불법사금융 전담자 (17명)를 배치\*하여,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종합적인 지원을 받도록 조력하는 업무만을 수행토록 하였다. 전담자는 1)피해내역 확인 및 피해 신고 절차 제반 지원부터 2)불법사금융업자에게 즉시 추심 중단 경고, 3)피해구제·지원 절차 진행상황 확인, 4)사회 복귀를 위한 채무조정, 고용·복지 지원 연계까지 피해자가 이용가능한 모든 정부·유관기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게 된다.

\* 8대 권역 각 2명(제주 1명), 본부(지원팀) 2명

※ 전담자가 배치되지 않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시, 불법사금융 피해 기초 상담 후 관할 지역 전담자가 배정되도록 상담 연계 예정



또한,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 이용 과정에서 어떠한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전 기관 공통 업무 매뉴얼\*을 제작하여 공유하고, 유관기관 간 긴밀한 연락·협조를 위한 핫라인(Hot-line)도 구축하였다.

\* 피해 접수 및 피해 유형 분류 기준, 증빙자료 확보 및 연계 절차, 피해 차단 제도 안내 (☞ 1)초고금리(연 60% 초과)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이자 무효임을 안내. 2)불법사금융·불법추심 이용 전화번호 등 불법수단 차단절차, 3)금감원 등의 불법추심 차단을 위한 초동조치 연계방법 등)

\*\* 현장 간담회('25.8.22일, 12.29일)시, "일선 대응 현장에서도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이자 무효화 대상'이라는 점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대응하고 있다"는 건의사항 등 반영

실제로 금감원에 피해 상담을 받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 시범운영**(’26.2.26일~3.6일) 결과, 불법사금융업자의 추심이 즉각 중단되고, 일부 불사금업자는 **원리금 반환\*** 의사를 타진하는 등 **가시적인 피해 구제 효과**가 있었다. 또한 **여러 정책적인 지원제도**(신복위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등)도 함께 안내받고 연계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개정 대부업법(’25.7.22일)에 따라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  
→ 상환 의무가 없으며, 피해자가 상환한 원리금이 있다면 (불사금업자가) 반환하여야 함

< 원스톱 종합·전담지원시스템 이용 사례 >

- ① (사례 1) A씨는 **부족한 생활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불법사금융을 이용**(최초 이자율 약 5,200%, 2개월간 총 1,000만원의 불법대출을 시행), A씨는 총 7명의 불사금업자 중 5명에게 **750만원을 상환**하였으나, **불법사금융임을 인지하여 금감원 신고 후 전담지원시스템으로 연계** ⇒ (지원결과) 불사금업자에 대한 **경고문자 발송 후 불법추심 급감**(일부 불사금업자는 원리금 반환 의사 표명), 제도권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 제도** 등도 알고 이용할 수 있게 됨
- ② (사례 2) B씨는 사업자금 대출 상환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였고, **연이율 60%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의 피해사실을 인지 후 전담지원 시스템을 통해 신고 ⇒ (지원결과) **불사금업자(7명) 대상 경고문자 발송 직후 불법추심 중단**(일부 불사금업자는 채무 종결 의사 확인), 법인개인대출 대상 **신복위 개인채무조정, 새출발기금** 등 관련 **제도를 안내**받고, 불법추심 경험 등으로 인한 심리적 피해에 대해서는 **심리상담 연계 지원** 등도 받을 수 있게 됨

< 현장 건의사항 청취 및 향후 제도 운영 방향 >

이후 진행된 현장 의견 청취 과정에서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 개선·보완**을 위해 필요한 사항도 건의되었다. 우선, 피해자가 **다수의 불법사금융 업자로부터 추심 협박** 등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으며, 다수 불법사금융 피해 증빙서류를 정리하고 기관 간 공유하여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발언이 있었다. 이에 피해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피해 차단**을 위해서는 **관련 절차 및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피해자들의 의견이 많았다. 또한,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의 모든 서비스 이용을 위한 **증빙 자료**가 다 정리되기 전이라도 우선 시급한 **추심중단 서비스**를 먼저 제공하는 등의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서비스 이용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바 **권역별 서민 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배치된 **전담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상민 교수) 등도 제시되었다. 원스톱 종합·전담지원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수사를 통해 **불법사금융업자들의 추심을 실효적으로 중단**시키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특사경의 업무범위**에 대부업법 위반 뿐 아니라 **채권 추심법 위반도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서울시 경제수사과)도 개진되었다.

\* 「사법경찰직무법」 상 지자체 불법대부업 특사경의 직무 범위 등 개정 필요사항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현장의 의견을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한 번에 다수 불법업자와 관련된 수많은 피해 증빙 자료를 전부 준비하여 일괄 신고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바, 피해자의 피해 상황에 따라 불법추심 중단을 위한 경고 조치, 전화번호 차단, 계좌 차단 등을 순차적으로도 진행할 수 있도록 지도·안내\*하였다. 피해 신고자료의 신속한 접수·처리를 위해 금감원-신복위-법구공 간 전산시스템도 연계할 예정이다. (~'26.3분기) 또한, 운영상황을 보아가며 권역별 전담자 배치 인력을 늘리고 전담자가 상시 배치된 센터를 現 8개 센터보다 확대해 나가는 한편, 지자체 복지재단 등과의 업무협력·연계를 통해 다양한 채널을 통한 불사금 신고·상담 수요 등을 소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불법대부업 특사경 업무범위 확대와 관련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경찰직무법」의 주관부처인 법무부, 불법사금융 TF의 총괄부처인 총리실 등과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시범 운영 기간에는 불법대부 증빙, 불법추심 피해, 다른 피해구제 제도 이용 희망 여부,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 관련 서류가 다 마련되어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피해자가 필요한 부분부터 즉시 서비스 제공토록 안내 예정  
 ↳ 예) ①불법추심 증빙이 먼저 준비된 불법업자부터 추심을 즉시 중단시키고, ②이후 다수의 채권·채무관계가 정리되면 소송 지원을 수행하는 등 조치

\*\* (기관별 건의사항) 1)특사경 직무범위를 대부업법+채권추심법까지 확대, 2)지자체 뿐 아니라 금감원도 특사경 지정

앞으로 피해자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을 통해 다음과 같은 불사금 피해예방·구제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종전 신고 체계 대비 기대 효과 >

	종전 신고체계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
불법사금융 신고	· 무슨 제도를 이용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움 · 피해신고 준비 서류 등이 많아 서비스 이용까지 장기간 소요(신고 포기도 다수)	· 전담자 지원을 통해 <b>신고서류 등을 신속편리하게 준비하고, 준비된 부분부터 서비스 즉시 이용</b> 가능 (신고 포기 X)
불법추심 즉시 중단	· 채무자대리인 선임(10일 소요)까지 불법추심 지속 // 금감원 초동조치 이용시에도 신고일부터 2일 이상 소요	· 상담일 <b>당일(D+0)부터</b> 센터 전담자의 초동조치로 <b>불법추심 중단</b>
불법수단 차단 통한 피해 확산 방지	· 전화번호 이용중지, SNS 계정 차단 등만 가능하여 피해 확산 방지에 한계	· 전화·SNS 뿐 아니라 불법추심에 이용된 <b>대포통장(차명계좌)</b> 등도 <b>차단</b> 하여 범죄 피해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
피해 구제	· 증빙자료 부족, 신고 지연 등으로 불법업자 특정·검거가 어려워 원리금 반환 등에 한계	· 전담자 조력으로 <b>신속한 신고, 증빙자료 내실화, 대포통장 차단</b> 등 통해 <b>불법업자 특정·검거, 원리금 반환</b> 가능
정책적 지원	· 여러 정책적 지원제도를 알기 어려워 이용에 한계	· 전담자 상담과정에서 <b>정책서민금융, 고용·복지 지원</b> 등을 <b>편리하게 연계</b>

<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 이용 시 피해 경감 기대 효과(시간순서별)>

① D+0일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상담 및 즉시 추심중단

- (피해자 전담·조력) 전담자가 피해자와 구두로 상담하면서 대출금내역, 불법추심 및 통화내역 등 정리
- (1차 경고 및 추심중단) 피해자 상담과 동시에 신복위에서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문자로 경고 → 대다수 추심이 즉시 중단
- (연계서비스 제공) <sup>신복위</sup>채무조정, 정책서민금융, 고용·복지 지원 등 연계

② D+1~2일 : 금융감독원 초동조치를 통한 잔여 불법추심 전면 중단

- (2차 경고 및 추심중단) 금감원에서 불사금업자에게 추가 경고 → 신복위 경고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추심 중인 업자의 경우에도 추심 중단
- \* 불법사금융업자는 '금융감독원', '경찰' 등이 개입하는 것을 인지시 추심을 즉시 중단하는 경향

③ D+7~14일 : 추심수단 원천 차단 및 법률조력 이용

- (추심수단 원천 차단)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추심에 이용된 차명계좌\*, 전화번호와 SNS계정, 불법대부광고 등이 차단되면서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압박이 강화
- \* 금감원 신고 대포통장(차명계좌)에 대해 강화된 고객확인(EDD)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즉시 거래관계 종료
- (원리금 상환액 반환) 피해자는 금감원이 증빙 서류 검토 등을 통해 발급한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확인서를 통해 불사금업자에 대응 → 원리금 상환 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그동안 상환한 원리금의 반환 등도 기대 가능
- (법률조력) 법률구조공단에서 선임 지원한 변호사를 통해 <sup>1)</sup>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고, <sup>2)</sup>해당 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불사금업자와의 연락을 전담토록 하는 등 불법추심에 대응 가능

④ 범인 검거 이후 : 소송절차 통해 피해회복

- (원리금 반환(부당이득 반환청구) 및 손해배상) <sup>1)</sup>경찰수사를 통해 범인을 검거하면, <sup>2)</sup>금융거래 중지(고객확인제도)를 통해 동결되어 있던 범죄수익을 <sup>3)</sup>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제기 등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게 됨

### III. 업무 협약식

한편, 이날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기 체결된 원스톱 종합·전담지원체계 관련 정부-유관기관 간 협약식('26.2.6일, 총리실-금융위-경찰청-금감원-신복위-서금원-법구공) 에 뒤이어, 원스톱·종합 전담지원 시스템의 실무 운영·집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법률구조공단-서울시·경기복지재단 간 업무 협약식도 개최되었다.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은 각 기관이 이미 운영중인 피해 지원 제도를 보다 효과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제도인 만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담자의 역할 뿐 아니라 각 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보다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각 기관은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담인력을 지정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유관기관 MOU 체결을 통해, 앞으로 피해자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시스템에서 연계 가능한 다양한 서비스를 보다 충실하게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자체 복지재단(서울시·경기복지재단)도 이번 MOU에 참여하는 만큼, 해당 복지재단의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도 불법추심 신속 중단, 소송지원 등 피해구제, 정책서민금융 및 고용·복지 지원제도 연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 국민의 서비스 접근성 및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 < MOU 체결을 통한 각 기관별 역할 >

- <금융위원회> 지원체계 구축 및 지원체계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관리·감독, 지원
- <금융감독원> 피해신고 접수, 피해상담, 피해신고건에 대한 초동조치, 경찰청·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참여기관으로의 연계 등 담당
- <신용회복위원회> 불법사금융 피해상담, 피해신고서 작성 조력, 피해회복 등 피해자 지원 및 연계를 위한 전담인력 운용, 지원체계 실적 관리 등 담당
- <서민금융진흥원> 지원체계의 안내 및 연계, 불법사금융 피해회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지원 등 담당
- <대한법률구조공단> 채무자대리인 선임 및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관련 소송대리 업무 등
- <서울시·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 피해상담, 피해신고건에 대한 초동조치, 피해신고 조력(불법광고 모니터링 및 신고 등 포함), 지원체계의 안내 및 연계 등 담당

## IV.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 이용방법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담자가 배치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내방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또는 각 센터에 전화로 상담 후 내방하면 된다. 해당 센터 위치 및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 8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연락처 >

지부 (관할권역)	주소	연락처
서울중앙 (서울·강원)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6층	02-750-1281
인천 (인천·경기북부)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611, 삼성생명빌딩 15층	032-864-9465
수원 (수원·경기남부)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37, 코스모수원빌딩 8층	031-307-6269
대전 (대전·충청)	대전 중구 중앙로 116, 대전신용보증재단빌딩 3층	042-538-0206
광주 (광주·전라)	광주 동구 금남로 148, 에이원타워 6층	062-233-1876
대구 (대구·경북)	대구 중구 중앙대로 398, 현대빌딩 6층	053-428-9380
부산 (부산·울산·경남)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0, 국민연금공단 16층	051-866-0037
제주 (제주)	제주시 중앙로 165, 제주고용복지+센터 3층	064-902-3257

금감원(1332)에 불법사금융을 신고·상담하거나 경찰에 신고한 경우에도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의 지원체계로 연계된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을 하는 피해자에 대해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 이용 의향을 묻고,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피해자 분들에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직접 연락하여 내방을 안내할 수 있도록 연계한다. 경찰도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해 피해신고 접수 뿐만 아니라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자료(참고1)를 배부하기로 하였다.

## V.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단순히 정책 공급자 편의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들께서 온라인을 통해서도 한 번에 편리하게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26.하반기 중 온라인 통합신고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25.12.29일) 중 시행령 등 하위 규정 개정만으로 추진 가능한 사항\*은 '26.2분기 중 입법이 완료되도록 하고, 불법추심에 이용된 대포통장, SNS 계정 및 연계 전화번호 차단 근거 마련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 등도 신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한 번의 신고서 제출로 모든 피해 지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신고 서식 법정화  
(→ 현재는 행정상 안내를 통해 해당 서식을 신고시 별첨 증빙자료 등으로 활용중)

\*\* 1분기 중 관련 입법안 마련 → 2분기 중 의원입법 추진

### <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 문구 >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별첨 1.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별첨 2. 원스톱 종합·전담지원시스템 운영현황 및 향후계획(신복위)

담당 부서 <총괄>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책임자	과 장	임형준	(02-2100-2510)
		담당자	사무관	유원규	(02-2100-2514)
		담당자	사무관	김상록	(02-2100-2513)
		담당자	사무관	박은경	(02-2100-2522)
담당 부서 <공동>	금융감독원 민생침해대응총괄국	책임자	국 장	임정환	(02-3145-8270)
		담당자	팀 장	장종현	(02-3145-8129)
		담당자	팀 장	민혁진	(02-3145-8277)
	신용회복위원회 전략기획부	책임자	부 장	박성우	(02-750-1071)
		담당자	팀 장	도현호	(02-750-1075)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소비자보호부	책임자	부 장	윤석민	(02-2128-8320)
		담당자	팀 장	배성훈	(02-2128-8272)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사업부	책임자	부 장	석취상	(054-810-1061)
		담당자	과 장	김봉규	(054-810-1062)

대한민국  
지책브리핑



#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제도 안내문





## 불법사금융 종합·전담 지원 제도란?

 한 번의 신고만으로 전담자가 배정되어 초기 대응부터 불법추심 차단, 수사이뢰, 채무자대리인 선임까지 피해자에게 필요한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 전담자는 무엇을 도와주나요?

 불법사금융 피해내역 정리, 증빙자료 준비, 신고서 작성과 채무조정, 고용·복지 연계 등 피해회복에 필요한 사항을 도와드립니다. 



## 전담자 상담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전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로 상담 신청  
 (방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서울중앙, 인천, 수원,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제주)  
 ※ 콜센터 전화상담 후 방문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 대응요령 10계명

### 01 정책서민금융상품 등 정부·지자체가 지원하는 금융·복지를 먼저 활용하세요!

- 서민금융진흥원(☎1397, www.kinfa.or.kr)에서 불법사금융예방대출, 햇살론 등 저금리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 가능 여부를 우선 확인하세요!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금융(정책서민금융, 채무조정)-복지(생계비 지원)-고용(취업지원)을 종합적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02 문자, 포털, SNS 등으로 유혹하는 대출광고에 유의하세요!

- '당일 대출', '누구나 대출' 등 신속 편의성으로 유혹하거나, 정부지원 서민금융을 사칭하는 대출 광고에 유의하세요.

### 03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합법적인 등록업체인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3번)에서 거래상대방의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명 등을 대조하여 합법적인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인터넷)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 "불법사금융지킴이" →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 신고·상담 안내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를 통해 조회
- 사전에 확인한 전화번호와 다른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면, 즉시 전화를 끊고 해당 등록업체가 등록된 지자체 또는 금감원으로 신고하세요!

### 04 대출 상담시 SNS 계약체결, 개인정보 요구 등은 불법사금융으로 의심하고 즉시 중단하세요!

- 카카오톡,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등 SNS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모두 불법입니다.
- 지인 연락처, 신체사진,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설치 등을 요구하는 것은 연체시 지인에게 유포하여 협박할 목적이므로 절대 주지 마세요!

### 05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원리금 무효 등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을 정확히 숙지하세요!

-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지 않아도 됩니다. (연이자율 60% 초과 초고금리, 계약 과정에서 나체사진 요구, 폭행·협박 등을 이용하여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체결, 돈을 못 갚으면 지인 추심한다는 내용 등)
-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이 아니라도, 불법사금융업자와의 대부계약은 이자를 갚지 않아도 됩니다.
-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갚지 않아도 됩니다.
- 대출·대부 알선에 대한 대가로 중개수수료(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거마비 등 명칭 불문)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06 대출조건이 명시된 **계약서를 설명·교부받고, 통화·문자, 이체내역 등 증빙을 보관하세요!**

- 대부계약 체결시 반드시 대출조건을 설명받고, 조건이 명시된 대부계약서를 교부 받으세요!
- 상대방의 전화번호, SNS ID, 계좌번호, 이체내역 등 증빙을 보관하여 추후 피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 07 피해가 발생했거나 걱정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즉시 신고·상담하세요!**

- 금감원(☎1332→3), 경찰청(☎112) 등 신고·상담하시면 불법추심 차단, 수사의뢰, 소송지원 등 피해대응 방법을 종합적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08 불법추심·불법대부 전화번호뿐 아니라 **SNS계정도 이용중지 신고하여 차단하세요!**

- 불법추심, 불법대부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뿐 아니라, SNS계정(카카오톡, 라인)에 대해서도 이용중지를 신청하여 연락을 차단하고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 (인터넷)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 “불법사금융지킴이” →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 “불법금융행위 제보신고”를 통해 신고  
카카오톡·라인 계정은 어플 “신고하기” 기능을 통해서도 차단 가능

## 09 개인정보, 신체사진 유포 등 **SNS 불법 게시물, 신고하여 차단하세요!**

- 채권추심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불법게시물을 신고하여 차단할 수 있습니다.
- \* (이메일) 금감원 jebo1332@fss.or.kr로 신고  
(인터넷)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를 통해 신고  
성착취 피해할영물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로도 신고가능

## 10 불법추심 대응, 피해구제를 위해 **무료 채무자대리인 지원제도를 신청하세요!**

- 금감원이 불법추심자에게 불법추심을 즉시 중단하도록 경고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 대신 불법추심자의 연락을 받는 등 추심행위에 대응합니다.
- \* 불법대부계약 원리금 무효화 소송, 손해배상 소송, 개인회생·파산, 법률상담 등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 (인터넷)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 “불법사금융지킴이” →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 “채무자대리인 및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등 소송대리 무료지원 신청”을 통해 신고  
(전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3번→6번)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0번)